

油印物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意見단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漢江市民公園에 設置된 駐車施設을 有料化 함으로써 漢江管理에 所要되는 赤字經營을 다소나마 補完하여 經營合理化를 도모할 뿐 아니라 施設 管理의 效率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駐車施設의 有料化는 當 委員會에서 執行部에 數次 建議했던 內容이며 第2條의 漢江利用施設物에 駐車施設을 포함시키고 第4條第1項 但書에 駐車施設管理를 서울特別市施設管理公園에 委託할 수 있도록 하여 施設物을 效率的으로 管理 運營함으로써 市民의 福利增進에 기여코자 하며, 駐車料는 서울特別市停車場設置및管理條例에 정한 路外停車場 料金を 準用함으로써 駐車料金の 적정과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별 다른 意見이 없습니다. 그러나 駐車料는 서울特別市停車場設置및管理條例에서 정한 路外停車場 料金を 準用토록 하면서 서울特別市交通影響評價對象事業및施設의地域範圍에 관한條例에서 規定한 都心地域이 規定되어 있음에도 級地調整을 따로 定할 必要性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使用料 徵收 駐車施設의 指定問題도 점차 全面 有料化 할 수 있는 方向으로 指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施設管理公園에 委託하는 問題도 停車場 管轄 自治區에서 直接 管理하는 問題와 比較 檢討할 必要性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한강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자 및 제안일자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제안일자 : 1993.2.10
- 1. 제안 이유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인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한강에 설치된 시민이용 시설물에 주차시설을 포함하고 사용료를 징수토록 함. (안 제2조)
- 나. 주차시설관리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다. 주차료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노외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함. (안 제4조의 2)

○委員長 沈相一 林相德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할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質疑가 끝나면 質疑를 모아서 漢江管理事業所長님께서는 한꺼번에 答辯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金炳植委員님 質問해 주십시오.

○金炳植委員 金炳植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中 第4條의2 第1項 本文은 漢江利用施設의 使用料를 市長이 정하여 告示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市民의 負擔이 되는 使用料의 決定은 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하는 것이 地方自治法의 精神이므로 1992年 4月 9日 條例整備特別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同年 4月 22日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54回 本會議에서 改正 議決한 條項입니다. 그러함에도 同 條項 但書에서 다시 市長이 따로 정하도록 但書를 新設하려고 하는 바 改正條例案 第4條의2 第1項 但書 新設條項을 “駐車料金は 서울特別市 停車場設置및管理條例에서 정한 路外停車場 料金を 準用한다”로 修正하고 以下 文句는 생략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判斷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條例 相互間에는 衡平性을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本文에서 使用料